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2-150
----------	--------

발의연월일 : 2022. 11. .

발 의 자 : 남해석 위원 외 1명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직개편 (‘22. 10. 7.자)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기구 명칭 변경 및 신설 부서를 명시하여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임위원회 소관 조직 명칭 변경 및 신설(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없음

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행정건설위원회

- 가.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마.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바.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 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도시위원회

- 가. 복지동행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나. 도시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 라.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략)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건설위원회	2. 행정건설위원회
가. 마포1번가연구단에 속하는 사항	가. 새마포담당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기획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관광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관광일자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재정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교통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복지도시위원회	3. -----

가. <u>복지교육국</u> 소관에 속하 는 사항 나.·다. (생 략) <u><신 설></u> ③ (생 략)	가. <u>복지동행국</u> ----- ----- 나.·다. (현행과 같음) <u>라.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u> <u>소관에 속하는 사항</u> ③ (현행과 같음)
--	---

[관 련 법 령]

□ 「지방자치법」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67조(위원회의 권한) 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 또는 지방의회가 위임한 특정한 안건을 심사한다.

제71조(위원회에 관한 조례)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